

2006. 12. 5(화) 10:00



134회 거창군의회(정례회)  
제 2차 본회의

거창미래전략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총 무 위 원 회

# 거창미래전략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06. 11. 8.
- 제출자 : 거창군수 (전략사업추진단장)
- 회부일자 : 2006. 11. 9.
-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6. 11. 27(제1차 총무위원회)
- 의안번호 : 제2006 - 60호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- 제정이유
  -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여건과 특성을 살린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지역을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내 대학교에 발전연구소를 설치하여 관·학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음.
  - 거창전문대학의 발전은 우리군의 교육도시 브랜드를 높이고 유동인구를 유입하는 큰 축이라 할 수 있으므로 상호 상생발전을 이루는 협력체계가 필요함.
  - 지역실정에 밝은 거창전문대학 교수들이 중심이 되고, 국내 우수 기관과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연구소를 설치하여 거창을 발전시키는 싱크 탱크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함.

## ○ 주요골자

-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현실적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정함(안 제1조)
-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와 정책개발 등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연구소의 주요업무를 정함(안 제4조).
- 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은 거창군과 거창전문대학간 공동으로 부담하고 거창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함(안 제5조).
- 연구소 운영의 기본방침, 운영규정, 예산 및 기타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정함(안 제6조).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동 조례안은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지역발전을 위해 종합적이고 투자적인 발전계획을 연구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한편, 군정전반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토록 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
- 동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입안·심사기준인 제정입법의 필요성 여부와 주요내용별 세부적 사항을 살펴본 결과
  -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관련규정에 별다른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으나
- 동 조례안을 제정 시행하기에 앞서 『거창군 미래전략연구소』는 이미 지난 2006년 8월 7일 개소식이후 운영중에 있음에도 3개월이 지난 11월 임시회에서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함.

- 동 조례안의 제5조(출연금) 제1항에서 ‘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은 거창군과 거창전문대학 간 공동으로 부담한다’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서
  - 공동이란 용어는 향후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므로 이의 표현을 공동 ⇒ 1 : 1 또는 각 50%씩 으로 용어를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,
- 또한 동 조례안 부칙 제2항(경과조치)는 법규에 따라 소급적용을 하여야 할 필요가 생기는 특별한 경우(일반주민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나 당사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,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)에는 예외적·한정적으로 허용(대판 2004다8630)되고 있으므로 조항자체는 아무런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지만
  - 동 조례안을 제정하기에 앞서 이미 개소식까지 하였다면 소급적용을 시켜야 하는 주 대상은 미래전략 연구소 임에도
  - 거창군수와 거창전문대학장 간에 체결한 양해각서를 소급적용토록 표기한 것은 다소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므로 아래와 같이 수정토록 함이 좋을 것으로 검토됨.

원 안	수 정 안
<b>부칙</b> ①(현행과 같음) ②(경과조치) 2006년 3월 14일 거창군수와 거창전문대학장 간에 체결한 양해각서는 본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.	<b>부칙</b> ①(현행과 같음) 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이전에 설치된 “연구소”는 본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

- 동 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중인 『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운영지원 조례안』 이 동시에 상정되어 거창군 1개 행정기관에 동일 시설에서 2개의 연구소를 설치하여야 하는 필요성과 통합 운영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수정안 요지

○ 동 조례안 부칙 제2항(경과조치)에서 소급적용을 시켜야 하는 주체는 미래전략연구소이므로,

⇒ 부칙 ②(경과조치)의 "2006년 3월 14일 거창군수와 거창전문대학장 간에 체결한 양해각서는 본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" 를 "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연구소는 본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"로 수정함이 타당함.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## □ 거창미래전략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원 안	수 정 안
<p>부칙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(경과조치) <u>2006년 3월 14일</u>  <u>거창군수와 거창전문대학장 간에</u>  <u>체결한 양해각서</u>는 본 조례에                      의한 것으로 본다.</p>	<p>부칙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(경과조치) <u>이 조례 시행이전에</u>  <u>설치된 “연구소”</u>는 본 조례에                      의한 것으로 본다.</p>